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-2호

Apr. 2024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,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가산행위 금지를 위한「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」 규정 변경 예고 (3.5.) -

1. 개 요

▪ **중도상환수수료**의 **합리성·투명성·공정성**을 제고하기 위해 「**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**」 **일부개정규정안**에 대한 **규정변경예고를 실시**('24.3.4.~4.15.)

2. 주요 내용

▪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「**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**」(이하 '금소법')에 따라 **원칙적**으로 **부과가 금지**되고 있으나,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**3년 內에 상환**시 **예외적으로 부과 가능**하도록 운영되고 있음(금소법§20 ①4호나목)

• **금융회사**의 **영업행위**, **상품특성** 등에 대한 고려없이 **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***에서 **획일적****으로 **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**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

* 예) 1)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, 2) 자금운용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, '변동금리 대출'과 '고정금리 대출'간 수수료 격차 미미

**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.4%, 변동 1.2%로 모두 동일

▪ 이에 금융당국은 **대출금 중도상환** 時 **❶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, ❷대출 관련 행정·모집비용** 등 **실비용 內**에서만 **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**토록 하며, 同 **비용** 外에 **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**하는 행위는「**금소법**」**상 불공정영업행위***로 금지할 예정

* 금소법 §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(1억원 이하)

► **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**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3. 향후 계획

- **금융위·금감원은 금융권**과 함께 同 **감독규정 개정**에 따른 **필요 조치 사항**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**가이드라인을 마련**(모범규준 개정)하는 한편, **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** 및 **부과·면제현황** 등에 대한 **공시**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계획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개정안은'**24.2분기** 중 **개정 절차를 완료**하여 **6개월 후에 시행**될 예정이며, 同 시행 시기에 맞춰 **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·공시 시스템 정비** 등도 완료될 예정

(원문 링크)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1824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